

	<h2 style="margin: 0;">강사 인사규정</h2>	규정번호	KTC-D-42	1/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분진학원 「교직원인사규정」 제7조에 의한 “강사”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비전일제로 근무하는 강사를 말한다.

제 2 장 임 용

제 3 조(자격) 강사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는 자로 한다.

제 4 조(임용시기) ①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조(임용절차) ① 강사 신규임용은 공개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3년 이상 근무중인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 절차는 「강사신규채용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③ 임용에 필요한 서식은 [부록] 교원인사 서식을 따른다.

제 6 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정계·연구년(6개월 이하)
2.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사망

② 임용기간은 통산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략적 필요에 의거 임용기간 초과자를 해당 학부(과)에서 재임용 추천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할 수 있다.

	<h2 style="margin: 0;">강사 인사규정</h2>	규정번호	KTC-D-42	2/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③ 임용할 수 있는 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해당 학기말까지로 한다.

제 7 조(임용제한)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2. 학부(과 및 본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본 대학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4. 재임용탈락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 8 조(임용취소)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임용 시 제출서류가 허위사실 또는 허위 증명인 경우
3.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과목이 속한 학부(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 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4.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제 9 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1.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2.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
4. 해당학기에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자

제 10 조(면직사유)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

1. 정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학부(과)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경우
5.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강된 경우
6.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7.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h2 style="margin: 0;">강사 인사규정</h2>	규정번호	KTC-D-42	3/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8.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가. 제15조제2항에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수업 및 휴·보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9.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10.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 ② 강사가 면직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 3 장 재 임 용

- 제 11 조(재임용) ①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 ②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5호] 서식 「재임용신청서」 및 관련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기대 또는 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재임용 평가 시기는 재계약 예정 직전학기 중에 실시하며, 재임용평가는 [별표3호]의 ‘강사 재임용평가 기준’에 따른다.
- ④ 강의향상설문평가 결과가 평가시행 직전 3개 학기 중 2개 학기 이상 전체 교원의 하위1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 한다. 다만, 임용 학기가 3개 학기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별표3호]의 ‘재임용 기준점수’를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⑥ 재계약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당연 퇴직한다.
- ⑦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거부사유를 1개월 전까지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2 조(재임용 탈락 시 소명) ①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2 style="margin: 0;">강사 인사규정</h2>	규정번호	KTC-D-42	4/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 신청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 한다.

- 제 13 조(재임용 거부)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호의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2. 소속 학부(과) 폐과한 경우
 3.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임용한 경우
 4.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기타, 임용계약서의 재임용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 직무 및 근로조건

- 제 14 조(의무)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법령과 본 대학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연계된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 작성 및 준수
 2. “1호”에 따른 담당 교과목의 강의 및 성적 처리
 3.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 지도
 4.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이수 : 대학 학사운영 설명회, 성폭력예방 관련 교육, 장애학생 인식 관련 교육 등
- ③ 「학칙」 제48조에 의한 교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제 15 조(소속) 강사가 본 대학 내의 여러 학부(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로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16 조(교수시간)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주당 9시간까지 할 수 한다.

	<h2 style="margin: 0;">강사 인사규정</h2>	규정번호	KTC-D-42	5/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 제 17 조(처우) ① 임금은 본 대학 강의료지급규정 및 임금계약 정한다.
- ②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 ③ 강사의 본인의 사정으로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학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8 조(휴직) ①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제 19 조(휴직기간의 만료 등)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 면직된다.
-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휴직기간 중에는 재임용을 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정관 제45조 제7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 제 20 조(휴직교원에 대한 처우) 휴직중인 강사는 본 대학 강사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 5 장 징 계

- 제 21 조(징계의 사유) 본 대학이 유지·경영하는 강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h2 style="margin: 0;">강사 인사규정</h2>	규정번호	KTC-D-42	6/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3. 성희롱·성폭력, 기타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 22 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제 23 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 1을 감한다.
-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제 24 조(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강사징계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 25 조(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은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④ 위원장이 사교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26 조(제척사유) 강사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 27 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h2 style="margin: 0;">강사 인사규정</h2>	규정번호	KTC-D-42	7/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강사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 28 조(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강사의 임면권자가 강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29 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강사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30 조(징계의결)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임면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강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④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징계의결의 기한) 강사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h2 style="margin: 0;">강사 인사규정</h2>	규정번호	KTC-D-42	8/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제 32 조(비밀누설의 금지) 강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33 조(보칙) ① 강사의 인사기록물 및 문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등을 준용하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재임용 절차 보장에 관한 예외) 2019학년 2학기에 신규임용 된 강사의 경우 신규임용 및 재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제 3 조(임용 중인 시간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이미 임용된 자는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강사 인사규정	규정번호	KTC-D-42	9/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부 록]

I. 교원인사 서식 자료

- <별표 1> 강사 신규임용 및 특별임용 신청서
- <별표 2> 강사 신규임용 서류심사 및 전공심사 평가표
- <별표 3> 강사 신규임용 면접 평가표
- <별표 4> 강사 재임용 신청서
- <별표 5>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
- <별표 6> 강사 임용 계약서 및 임금 계약서
- <별표 7> 개설교과목 강의 배정 계획서
- <별표 8> 교원 직급별 시수 배정 계획서
- <별표 9> 강사 임용 계획서

	강사 인사규정	규정번호	KTC-D-42	10/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별표 1> 강사 신규임용 및 특별임용 신청서
강사 신규임용 지원서

지원학과명	지원전공 분야	접수번호
-------	---------	------

사진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	
		생년월일		긴급연락처 :	
		전자메일	@			
최 중 학 력 (전공)	학위명	대학명	학과명	전공	학위 취득일자	비고
교육경력	기관명	부서명	직위	재직기간		
				시작일	종료일	
산업체경력	기관명	부서명	직위	재직기간		
				시작일	종료일	

강사 신규임용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대학교 총장 귀하

	<h2 style="margin: 0;">강사 인사규정</h2>	규정번호	KTC-D-42	11/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강사 특별임용 추천서

사진			성명			연락처	휴대폰 :	
			생년월일				긴급연락처 :	
			전자메일				@	
최종학력 (전공)	학위명	대학명	학과명	전공	학위취득일자	비고		
현직	기관명	부서명	직위	재직기간				
교육경력	기관명	부서명	직위	재직기간				
				시작일	종료일			
산업체경력	기관명	부서명	직위	재직기간				
				시작일	종료일			
담당교과목	학과	교과목명	담당시수	비고				

○○○○○ 학과 강사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학위 증명서(학사, 석사 및 박사) 1부
추천서 상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성명		(인 또는 서명)	성명		(인 또는 서명)
성명		(인 또는 서명)	성명		(인 또는 서명)
성명		(인 또는 서명)	성명		(인 또는 서명)

○○○○학부(과)장 (서명)

○○○○위원회 위원장 귀하

	<h2 style="margin: 0;">강사 인사규정</h2>	규정번호	KTC-D-42	12/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별표 2> 강사 신규임용 서류심사 및 전공심사 평가표

서류심사 평가표

초빙학과	초빙분야	지원번호	성명

심사 항목	세부 심사 항목	심사결과
서류심사	- 자격심사	<input type="checkbox"/> 적 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단위: 년)

연구·교육 직명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강사	1	1	2	1	2	3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위원회 위원장 귀하

	강사 인사규정	규정번호	KTC-D-42	13/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전공심사 평가표

초빙학과	초빙분야	지원번호	성명


	심사 항목	배점	세부 심사 항목	심사점수
전공 심사	① 학력	20	- 박사취득 (20점) - 석사취득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5차 이상 (18점) - 학사취득 (16점) - 전문학사 취득(14점) * 최종학위만 인정하며, 동일학위에 대한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② 교육경력	10	- 교육경력 4년 이상 (10점) - 교육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 (8점) - 교육경력 2년 미만 (6점) *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육경력만 인정	
	③ 산업체경력	10	- 산업체경력 4년 이상 (10점) - 산업체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 (8점) - 산업체경력 2년 미만 (6점)	
	④ 전공적합성	20	- 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매우적합 (20점) - 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적합 (15점) - 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매우유사 (10점) - 지원분야의 전공과 학력·교육·산업체경력이 유사 (5점)	
합계		60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위원회 위원장 귀하

	강사 인사규정	규정번호	KTC-D-42	14/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별표 3> 강사 신규임용 면접 평가표

강사 신규임용 면접 평가표

지원학과명	지원전공분야	성명	비고

심사 항목	평점					합계
	A (10점)	B (8점)	C (6점)	D (4점)	E (2점)	
1. 전공의 이해						
2. 품성 및 태도						
3. 표현능력						
4. 교육자로서의 자질						
합계						

- 심사위원별로 개별 평가하여 작성함.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항목이 2개 이상이면 임용 제외

년 월 일

위원소속		직위		성명	(서명)
------	--	----	--	----	------

○○○○위원회 위원장 귀하

	강사 인사규정	규정번호	KTC-D-42	19/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00대학 강사 임금 계약서

0000 총장(이하 “대학” 라 한다)과 _____(이하 “강사” 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임금계약을 체결한다.

“대학”	성 명		사 업 의 중 류	교 육
	사업체명칭	0000대학	사 업 자 번 호	
“강사”	성 명		전 화 번 호	
	현 주 소		주민등록번호	

근로 계약 내용

1. 근로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교과목 및 강의 시수

교과목명	학점	강의시수/주	비고

3. 학기 중 강의료 : 평균 강의시수/주 × 4주 × 33,000=_____ 원
4. 방학 중 강의료 :
 - 개강 전: 평균 강의시수/주 × 1주 × 33,000=_____ 원
 - 개강 후: 평균 강의시수/주 × 1주 × 33,000=_____ 원
5. 급여의 지급방법 : 수업이 있는 다음 달 5일에 지급하며, 방학 중 임금은 다음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6. 강의시수가 없는 경우 학기 중 강의료와 방학 중 임금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학기 중 폐강 경우에는 개강 전 임금은 지급할 수 있다.

본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작성하여 “대학” 과 “강사” 는 각각 계약서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대학) 00대학교 총 장 (인)
 (강사) 계약자 성 명 (인)

	강사 인사규정	규정번호	KTC-D-42	20/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별표 7> _ 개설교과목 강의 배정 계획서

000과 개설교과목 강의 배정 계획서

(2019학년도)

개설예정 교과목 (교육과정 편성 기준)						직급별 교원 배정 계획				비고
학 년	학 기	이 수 구 분	과 목 명	학 점	시 수	개 설 반	성 명	직 급	배 정 시 수	
1	1	전필	강사법1	2	2	A	홍길동	전임교원	2	
1	1	전필	강사법1	2	2	B	홍길동	전임교원	2	
1	1	전필	강사법1	2	2	C	홍길동	전임교원	2	
1	2	전필	강사법실무	4	4	A	김둘리	전임교원	4	
1	2	전필	강사법실무	4	4	B	김둘리	전임교원	4	
1	2	전필	강사법실무	4	4	C	김둘리	전임교원	2	team teaching
1	2	전필	강사법실무	4	-	C	나교수	강사	2	team teaching
2	1	교선	기업운영	2	2	A	강사A	강사	2	
2	1	교선	기업운영	2	2	B	강사A	강사	2	
2	1	교선	기업운영	2	2	C	강사A	강사	2	
개설시수 합계						24	배정시수 합계			24

※ 과목별 동일 직급의 교원이 팀티칭을 할 경우, 별도 입력칸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처장 귀하

	강사 인사규정	규정번호	KTC-D-42	21/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강사 인사규정	규정번호	KTC-D-42	22/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별표 8> _ 교원 직급별 시수 배정 계획서

교원 직급별 시수 배정 계획서

(_____ 학과)

1. 3년간 교육과정 편성 현황(분반 포함 작성)

년도	학기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운영 예상		비고
		학점	시수	학점	시수	
2019	1					
	2					
2020	1					
	2					
2021	1					
	2					

2. 직급별 시수 배정 계획(분반 포함 작성)

년도	학기	교육과정 운영 예상		전임교원		초빙교원		겸임교원		기타 비전임 교원		강사	
		학점	시수	학점	시수	학점	시수	학점	시수	학점	시수	학점	시수
2019	1												
	2												
2020	1												
	2												
2021	1												
	2												

○○처장 귀하

3.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강의 배정 계획서

성명 (직급)	책임 시수	1학기	담당교과목명	학점	시간	2학기	담당교과목명	학점	시간
홍길동 (전임)		2019	□□간호학실습	2	6	2019	△△간호학실습	2	6
		2020				2020			
		2021				2021			


상기와 같이 직급별 시수 배정 계획서를 협의하여 제출합니다.

0000. 00. 00.

확 인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학과(부)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처장 귀하

	<h2 style="margin: 0;">강사 인사규정</h2>	규정번호	KTC-D-42	23/23
		제정일자	2019.08.28	
		개정일자		
		관리부서	교학처	

〈별표 9〉 _ 강사 임용 계획서

강사 임용 계획서

(_____ 학과)

1. 강사 임용 계획 인원 : 총 00 명

※ 3년간 재임용 충족기준으로 작성

구분	1학기 배정 교과목 내역				2학기 배정 교과목 내역				기타 (우대사항)
	연도	담당교과목명	학점	배정 시수	연도	담당교과목명	학점	배정 시수	
강사 A	2019	<input type="checkbox"/> 간호학실습	2	6	2019	<input type="checkbox"/> 간호학실습	2	6	
	2020				2020				
	2011				2011				
강사 B	2019				2019				
	2020				2020				
	2011				2011				
강사 C	2019				2019				
	2020				2020				
	2011				2011				
강사 D	2019				2019				
	2020				2020				
	2011				2011				

상기와 같이 강사 임용 계획서를 협의하여 제출합니다.

0000. 00. 00.

확 인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학과(부)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처장 귀하